

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학사설치및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증 “충청북도 학사”를 “충북학사 및 농촌출신학생기숙사인 청
림재”로 한다.

제2조증 “충북학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6-2번지”에 두고
“청림재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355-6번지”에 둔다로
한다.

제5조증 “도지사”를 “도지사 및 시장군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<u>충청북도학사</u> (이하 “학사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(목적) ----- ----- <u>충북학사 및 농촌</u> <u>출신학생기숙사인 청람재</u> ----- ----- -----
제2조 (위치) <u>학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6-2번지에</u> 둔다.	제2조(위치) <u>충북학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76-2번지에</u> 두고 <u>청람재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</u> <u>지북동 355-6번지에</u> 둔다
제5조 (운영재원) <u>도지사는 학사운 영에 필요한 기금 및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,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.</u>	제5조 (운영재원) <u>도지사 및 시장,</u> <u>군수</u> ----- ----- ----- -----